

현행(제2판)	개정안(제2-1판)	개정 사유
4. 해외입국 관련 사항		
<p>4-1.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○ 예방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입국 시부터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임. 따라서, 일정 요건(4-2)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유지하며,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~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<p>4-2. 수동감시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▶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,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수동감시 실시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▶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①무증상일 것, ②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</div>	<p>4-1.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○ 일정 요건(4-2)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. 따라서, 일정 요건(4-2)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,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~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<p>4-2. 수동감시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) 예) 예방접종완료일이 9.1일인 경우 입국일이 9.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② 무증상일 것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③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*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</div>	<p>(개정) 입국1일차PCR 검사 관련 사항 추가</p> <p>(개정) 격리면제요건(접종완료자 여부 판단 기준일 조정(출국일 기준→입국일 기준)</p>

현행(제2판)	개정안(제2-1판)	개정 사유
<p>▶ "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"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: 공문(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)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 내 공지사항·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)(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)</p> <p>○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「수동감시 중 생활수칙」*을 준수(붙임 2) *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,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, 마스크 착용하기, 외출 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</p> <p>4-3. 수동감시 중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</p> <p>① 입국일로부터 6~7일차에 PCR검사 실시* 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</p> <p>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</p> <p>☞ ①,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,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</p> <p>○ 위 관련 각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</p>	<p>* "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"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: 공문(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)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 내 공지사항·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)(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)</p> <p>○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「수동감시 중 생활수칙」*을 준수(붙임 2) *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,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, 마스크 착용하기, 외출 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</p> <p>4-3.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</p> <p>①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~7일차에 PCR검사 실시* 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</p> <p>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</p> <p>☞ ①,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,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</p> <p>○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</p>	<p>(개정) 입국1일차 PCR검사 추가</p>

현행(제2판)	개정안(제2-1판)	개정 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></p>	<p>(개정) 접종완료자 여부 및 격리면제조건 확인 (검역소), 격리통지서 미발급 등 조정사항 반영</p>
<p>6.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통지·관리(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) ○ 단,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, 교정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, 교정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- 단,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,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문으로 지속적 관리(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) 	<p>(개정)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조정(방 역상황 고려하여 별 도 공문으로 관리)</p>

붙임 1.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

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(해외입국자용)

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한 경우)는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(예방접종증명서(중이 또는 애플)를 제시).

- ◆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아래 수동감시 전환 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격리통지서가 유효하므로,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(보건소로 입국자 명단 등보 시까지 평균 1일 내외 소요)
*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I 수동감시 관리 절차

[검역단계]
①(입국 직후-무증상자) 자가격리앱 설치(특별입국부스) 격리통지서 수령(출입국심사대) 후 실거주지 이동(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나, 가능한 자차 이용,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)
* 추후 보건소에서 출국일 확인 등을 위해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(입국 직후-유증상자)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,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

[지자체단계]
②(예방접종완료자 확인 &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) 수동감시 전환(자가격리앱 삭제)
※ (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) 자가격리 유지
③(수동감시 기간 중) 입국일로부터 6~7일차에 PCR검사 시행
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.
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,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, 마스크 착용하기, 외출 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
*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,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.
④(수동감시 종료)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

II 수동감시 전환 조건

- ①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)
[예방접종완료자]
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'예방접종증명서'를 소지하고 있거나,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)
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* 예) 예방접종완료일: 5.1일, 2주째: 5.15일, 지원 적용일: 5.16일 0시부터
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③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
*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

*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

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(해외입국자용)

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조건 충족 시 격리를 면제하고, 수동감시를 받게 되며, 입국 이후 1일차와 6~7일차 PCR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. 입국자는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에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예방접종증명서(중이 또는 애플)를 제시)

- ◆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, '음성' 확인시까지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'음성'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

I 수동감시 관리 절차

[검역단계]
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(중이 또는 애플 또는 접종스티커) 제시,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
* 자기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(가능한 자차 이용)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
*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,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

[지자체단계]
② (PCR검사)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검사 실시(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)
③ (수동감시 실시) 검사 결과, '음성' 확인 시 수동감시 실시(자가격리앱 삭제)
④ (수동감시 기간 중) 입국일로부터 6~7일차에 PCR검사 시행(관할보건소)
* 검사를 받지 않거나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되며, 확진자는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.
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,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, 마스크 착용하기, 외출 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
⑤ (수동감시 종료)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

II 수동감시 대상 조건

-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)
* 예)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, 2차 접종완료일이 9.1일인 경우 입국일이 9.16일 0시 이후이면 각리면제 가능
[예방접종완료자]
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'예방접종증명서'를 소지하고 있거나,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)
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* 예) 예방접종완료일: 9.1일, 2주째: 9.15일, 지원 적용일: 9.16일 0시부터
※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·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,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하며, 조건 충족시 각리면제 가능
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③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
*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

*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

(개정)
'해외입국자' 격리 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

현행(제2판)	개정안(제2-1판)	개정 사유
붙임 2.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(해외입국자용)</p> <p>◆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같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.</p> <p>◆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/p> <p>◆ 아울러 6~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.</p> <p>[자가 모니터링]</p> <p>○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.</p> <p>○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.</p> <p>▶ 주요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</p> <p>▶ 기타증상 :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증상(오심, 구토, 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, 피부 증상 등이 다양</p> <p>○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(업무담당자)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,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.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,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,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.</p> <p>[기타 생활수칙]</p> <p>○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.</p> <p>-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,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,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.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.</p> <p>○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.</p> <p>-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알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.</p> <p>○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.</p> <p>-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.</p> <p>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</p> <p>-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(2m) 거리를 유지합니다.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</p> <p>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</p> <p>○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*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.</p> <p>* 테이블 위, 문손잡이, 조명 스위치, 수도꼭지, 냉장고 문고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</p> <p>[수동감시 중 검사]</p> <p>① 입국일로부터 6~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.</p> <p>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.</p> <p>②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.</p> <p>☞ ①,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.</p> <p>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~_____월 _____일,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입니다. 담당보건소: _____ 담당자: _____ 긴급연락처: _____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(해외입국자용)</p> <p>◆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같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.</p> <p>◆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/p> <p>◆ 아울러 입국 후 1일차 및 6~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.</p> <p>[자가 모니터링]</p> <p>○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.</p> <p>○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.</p> <p>▶ 주요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</p> <p>▶ 기타증상 :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증상(오심, 구토, 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, 피부 증상 등이 다양</p> <p>○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(업무담당자)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,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.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,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,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.</p> <p>[기타 생활수칙]</p> <p>○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.</p> <p>-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,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,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.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.</p> <p>○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.</p> <p>-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알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.</p> <p>○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.</p> <p>-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.</p> <p>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</p> <p>-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(2m) 거리를 유지합니다.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</p> <p>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</p> <p>○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*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.</p> <p>* 테이블 위, 문손잡이, 조명 스위치, 수도꼭지, 냉장고 문고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</p> <p>[수동감시 중 검사]</p> <p>①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~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.</p> <p>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.</p> <p>②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.</p> <p>☞ ①,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.</p> <p>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~_____월 _____일,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입니다. 담당보건소: _____ 담당자: _____ 긴급연락처: _____</p>	<p>(개정) '해외입국자' 격리 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</p>

현행(제2판)	개정안(제2-1판)	개정 사유
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

붙임 3.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

□ 해외입국 사례

가. [검역단계]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(동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)	
입국시	○ 입국시 각종 안내서 제공 시에 '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(해외입국자용)'도 함께 제공(검역소)
무증상자	① 자가격리앱 설치(특별입국부스), 격리통지서 수령(출입국심사대) 후 실거주지 이동
유증상자	① 검역소에서 검사 실시 ②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

나. [지자체단계]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

입국후 1일내	① (질병청)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'에서 입국자 명단 확인 및 유선 연락 * 해외입국자가 "예방접종완료자"임을 알려줄 경우 ②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- (질병청) '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(접종완료일 확인) - 검역소 발급 격리통지서(출국일자 확인) ③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(본문 "4-2" 요건 확인) - 무증상 여부 재확인(*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) -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의 입국 여부 확인 : (질병청)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' 등 *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가능 ④ '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' 통지* 또는 교부 (☎ ☎ 요건 충족시 문자, 이메일 가능) * 입국일 기준 6~7일차 검사 안내 포함 ⑤ 자가격리앱 삭제
수동감시 기간 중	① 6~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, 검사 실시, 결과 확인 및 통지 *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검사를 전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☞ ①,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: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

※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능동감시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
 ○ 해외입국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지침에 따라 능동감시 중인 사람은, 이 지침 시행일(7.5)을 기준으로 수동감시로 전환 가능
 - 수동감시 전환 후 (입국 6~7일차 검사 이외의) 남아있는 검사 면제
 ○ 적용시점: 지침 시행일(7.5) 입국자 부터 적용

□ 해외입국 사례

가. [검역단계]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(동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)	
입국시	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- 입국자가 제시한 예방접종증명서(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) -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(예방접종 후 2주 경과) ②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(본문 "4-2" 요건 확인) - 무증상 여부 확인 -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의 입국 여부 확인 * 입국일 당일 기준 '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 수동감시 전환 가능' ③ 상기조건을 충족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확인된 경우 여권에 스티커 부착, '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(해외입국자용)' 배부
무증상자	① 자가격리앱 설치(특별입국부스), 실거주지 이동 안내 ②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(입국 1일차) 실시 안내
유증상자	① 검역소에서 검사 실시 ②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

나. [지자체단계]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

입국후 1일내	① (질병청)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'에서 입국자 명단 확인 및 유선 연락 ♣ 해외입국자가 "예방접종완료자"임을 알려줄 경우 ②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- (질병청) '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(접종완료일 확인) ③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♣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④ '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' 통지* 또는 교부 (☎ ☎ 요건 충족시 문자, 이메일 가능) * 입국일 기준 6~7일차 검사 안내 포함 ⑤ 자가격리앱 삭제
수동감시 기간 중	① 6~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, 검사 실시, 결과 확인 및 통지 *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자로 전환하며,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☞ ①,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: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

※ 적용례(21.8.30일부터 시행)
 ○ 이 지침 개정·시행 이전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
 - 본문 "4-2" 요건 충족 시 자가격리 해제(수동감시 전환) 처리 가능*
 * 단, 자가격리 해제(수동감시 전환) 처리 시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

(개정)
 '해외입국자' 격리 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

현행(제2판)	개정안(제2-1판)	개정 사유
붙임 5. 자주 묻는 질문		
<p>Q1. 예방접종완료자는 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)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,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?</p> <p>○ 2차 예방접종완료일: 5.1일, 2주째: 5.15일, 지침 적용일: 5.16일 0시부터</p> <p>Q2-1. 1차 접종자인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?</p> <p>Q2-2.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습니다.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?</p> <p>○ (공통) '예방접종완료자'가 아니므로 본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. 예방접종미완료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평균 2주 소요된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, 항체 형성 이전 확진자 밀접접촉이나 해외출국 시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</p>	<p>Q1. 예방접종완료자는 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)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,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?</p> <p>○ 2차 예방접종완료일: 9.1일, 2주째: 9.15일, 지침 적용일: 9.16일 0시부터</p> <p>* 예시) 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) 2차 접종일이 9.1일이라면, (해외입국자)입국일/(밀접접촉자)최초접촉일이 9.16일 0시 이후 인 경우 격리면제 적용 가능</p> <p>Q2-1. 1차 접종자인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?</p> <p>Q2-2.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습니다.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?</p> <p>○ (A2-1) '예방접종완료자'가 아니므로 본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. 예방접종미완료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평균 2주 소요된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, 항체 형성 이전 확진자 밀접접촉 시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</p> <p>○ (A2-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)라면 지침 적용 가능</p> <p>* 예시) 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) 2차 접종일이 9.1일이라면, 입국일이 9.16일 0시 이후 인 경우 격리면제 적용 가능</p>	<p>(추가) 해외입국자 및 밀접접촉자 적용 가능일에 대한 예시 추가</p> <p>(개정) 격리면제요건(접종완료자 여부 판단 기준일 조정)출국일 기준→입국일 기준 사항 반영</p>

현행(제2판)	개정안(제2-1판)	개정 사유
<p>Q7.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인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외입국 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할 때 ②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6~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 ③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증상발생으로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? <p>○ (①)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, 마스크 착용, 가능한 자차 이용,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</p> <p>○ (②)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, 가능한 자차를 이용, 반드시 마스크 착용</p> <p>○ (③)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(업무담당자)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리고,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.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해야 하며,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또는 보건소로 이동 시 자차,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,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</p> <p>☞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해야하며, 확진자 관련 조치 시행</p>	<p>Q7.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인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외입국 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할 때 ②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6~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/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차 검사 및 6~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 ③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증상발생으로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? <p>○ (①)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, 마스크 착용, 가능한 자차 이용,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</p> <p>○ (②)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, 가능한 자차를 이용, 반드시 마스크 착용</p> <p>○ (③)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(업무담당자)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리고,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.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해야 하며,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또는 보건소로 이동 시 자차,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,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</p> <p>☞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해야하며, 확진자 관련 조치 시행</p>	<p>(개정) 밀접접촉자와 해외입국자를 구분하여 제시</p>
지침 관련 실무 연락처		
	<추가>	(추가) 실무연락처 안내